

의안번호	2213458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5.8.14.
추계번호	25B4367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	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(제4항) 1.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 시설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	×	-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¹⁾, 동 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

1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(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

표준사업장²⁾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³⁾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⁾

□ 개정안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⁵⁾에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(이하 “직업재활시설”)을 추가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므로, 장애인고용 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의 규모와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 구간별 의무고용률 대비 미고용인원 및 연계고용대상 직업재활

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2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- 4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- 5) 「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」 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"연계고용"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(이하 "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"이라 한다)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(이하 "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"라 한다)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(이하 "연계고용대상 사업장"이라 한다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.
 2. "연계고용대상 사업장"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(단,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)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.
- 6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정신재활시설의 종류)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2. 재활훈련시설: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·교육·취업·여가·문화·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

시설의 장애인 고용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나,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